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159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이주희・이훈기・김우영
김한규・조계원・송기헌
임미애・박용갑・박균택
오세희・송재봉・손 솔
전종덕・서미화・박선원
한준호・노종면・이재강
문금주・강득구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7월 7일 시행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305호, 2026. 1. 6. 개정)에 따라, 기존의 사생활 침해・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・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.

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.

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·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,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,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.

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,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,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아울러 현행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,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·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, 관련 규정을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(안 제26조의2 신설

등).

법률 제 호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6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분쟁조정위원회)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조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조정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정위원은 각각 조정위원 정수의 5분

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
3. 언론사의 취재·보도·제작 업무(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·보도·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)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
4.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

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조정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조정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부의 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)

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당원
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⑧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⑨ 제8항에 따른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
⑩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조정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”은 “조정위원”으로, “위원회”는 “조정위원회”로 본다.

⑫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설치·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

무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승계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④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위촉된 조정위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6제1항 중 “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(이하 “분쟁조정부”라 한다)”를 “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쟁조정부”를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44조의18 및 제44조의19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4조의20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·단서 중 “분쟁조정부”를 각각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44조의21제1항 및 제2항 중 “분쟁조정부”를 각각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4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“분쟁조정부”를 각각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44조의2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쟁조정부”를 각각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66조제5호 중 “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”를 “분쟁조정위원회의”로 한다.

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제4호의2 중 “분쟁조정부”를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2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2. 제26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6조의2(분쟁조정위원회)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

	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조정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정위원은 각각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 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. 언론사의 취재·보도·제작 업무(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·보도·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)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.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
	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④ 조정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조정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부의 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.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)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당원 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	4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⑧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⑨ 제8항에 따른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 ⑩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⑪ 조정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”은 “조정위원”으로, “위원회”는 “조정위원회”로 본다. ⑫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

	설치·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